

상주시 공고 제 2023-1383호

「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1일

상 주 시



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과 중복·상이한 조항을 삭제 및 일원화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(안 제8조)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민간경력자 등의 연가가산 재직기간을 현행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확대

나.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 삭제 등을 통해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

- ‘삭제’형태 등으로 남아 있는 조항이나 항목 정비
- 상위법령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중복조항 삭제 등 조문 정비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31일까지 의견을 상주시장(참조: 총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 등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연락전화: 054)537-7154
- E-mail: kso9485@korea.kr / FAX: 054)537-6089
- 시 홈페이지: www.sangju.go.kr(입법예고란)
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 여부와 그 사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 - 의견제출할 곳: (우37211)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

4. 그 밖의 사항

이 조례 개정안의 상세내역은 상주시 홈페이지(www.sangju.go.kr)
→ 행정정보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붙임: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: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 건	비 고